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□ 다음은, 「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개정이유는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

□ 주요 내용은,

- 지방재정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
- 부위원장의 직무중 “사고가 있을 때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”로 변경하며
-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자 기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.

□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개정은 「지방재정법」이 2005년 8월 4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기존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 결정방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